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5373867(본소), 2023가단5055869(반소) 판결
[공사대금 · 가맹금반환 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팔마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형빈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자영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2.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본소장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1,415,02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4.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경위

1) 'C'이라는 영업표지의 카페 음식점업 가맹사업과 함께, 'D'라는 상호의 카페 음식점업(사업자등록일: 2021. 3. 16.)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2. 7. 7.경 피고로부터 'C' 가맹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와 'C' 가맹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20. 7. 23.경에 이르러 피고가 'C'이 아닌 'E 천안점(이하 '이 사건 카페')'을 개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7. 24. 피고로부터 'E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2022. 7. 26. 피고와 'E 천안점 경영관리 등 컨설팅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경영 컨설팅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피고에게 외식업 운영 및 경영관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원고가 자신의 외식업 경영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기술 등을 제공하고 피고는 컨설팅 Fee를 제공한다.

제2조 [원고의 제공 내용]

원고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1) 인테리어 및 매장편성(MD), 배치(Lay-out) 및 상품개발 관련 컨설팅

- (2) 상품 구매 및 상품 보관 관리 업무 관련 컨설팅
- (3) 광고, 홍보 및 판촉 관련 컨설팅
- (4) 경영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 컨설팅
- (5) 기타 위 (1) 내지 (4)에 부수하는 컨설팅

제3조 [컨설팅 Fee 등]

- 1. 피고는 제2조에 정한 원고의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 계약 체결시 선지급하기로 한다.
- 2.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

- 1. 피고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원고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원고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관중인 모든 영업비밀 및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파기하거나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 3. 피고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위로금 등]

-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 7. 26.부터 2022. 10. 31.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 기간 중 피고가 원고가 그 당시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그 즉시 목적달성되어 종료된다.
- 2. 본 계약의 만료기간까지 피고가 원고가 그 당시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단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으로 가맹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유 등과 같이 쌍방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고는 해당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총액에서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하여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카페의 개업 등

1) 원고는 2022. 8. 3. 피고에게 "천안 E 인테리어 비용 납입 일정"이라는 제목의 견적서를 전달하였는데, 견적서의 내용과 피고의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2022. 7. 24.	100,000,000	(납부완료)1) 피고가 2022. 7. 24. 원고에게 지급한 'E 계약금' 명목 100,000,000원을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총액에서 감액한다는 취지로 "(납부완료)"기재를 한 것이다.
선금	2022. 8. 3.	200,000,000	2022. 8. 3. 200,000,000
중도금	2022. 8. 10.	200,000,000	2022. 8. 10. 200,000,000
2차 중도금	2022. 9. 8.2) 이 부분 지급기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후 합의에 따라 2022. 10. 초순경으로 변경되었다.	100,000,000	2022. 10. 1. 50,000,000
2022. 10. 4. 50,000,000			
잔금	2022. 9. 30.	60,000,000	미지급
합계	66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500,000,000(납부완료 기재에 따른 100,000,000원 제외)	

2) 원고는 2022. 9. 22. 피고에게 위 견적서의 세부항목을 적은 명세서(이하 '세부명세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3) 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2022. 10. 15.경 대부분 완료되었고, 피고는 2022. 10. 23.경부터 'E'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카페 영업을 개시하였다.

4) 원고는 2022.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0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카페 관련 정보공개서의 전달 및 가맹계약 해지 의사표시 등

1) 원고는 2022. 9. 23. 공정거래위원회에 'E'라는 영업표지의 카페 음식점업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이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을 하였고, 이는 2022. 10. 6. 등록 완료되었다.

2) 원고는 2022. 10. 27. 피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 관련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는 2022. 11. 11. 원고에게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2022. 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카페의 영업표지를 'F'로 변경한 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24. 5. 1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 내지 16, 20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주장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위로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카페 관련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로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비 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가맹점 계약이 2022. 10. 31.까지 체결되는 경우에만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3항, 제1항), 피고가 원고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가 2022. 7. 24.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컨설팅비 1억 원은 이 사건 공사비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총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1억 6,000만 원(= 잔여 공사비 1억 원 + 부가가치세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1)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가맹희망자'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는 피고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억 원(= 컨설팅비 1억 원 + 공사비 5억 원) 중 인테리어 공사비

288,584,978원을 제외한 311,415,022원은 가맹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기도 전에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311,415,02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는 공사 업체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가맹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요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각 계약은 원고의 부작위로 인한 기망 또는 원고가 유발한 착오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이행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311,415,0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중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위로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위 규정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카페 관련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의 귀책사유(정보공개서 미공개)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소 중 이 사건 공사비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C'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E'라는 상호로 추가적인 가맹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고, 이후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도 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는 이 사건 카페를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제7조

제1항, 제3항),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제7조 제2항)을 통하여 가맹점 전환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통해 별도로 체결할 것이 예정된(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세부명세서에 가맹비 및 교육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2022. 10. 23.부터 2022. 11. 하순경까지 'E'라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페 영업을 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향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인 원고와 상담하거나 협의한 자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컨설팅비와 이 사건 공사비가 가맹금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 [별지1] 표 세부명세서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컨설팅비 1억 원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마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② 이 사건 공사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3)) 중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 합계액 54,450,000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③ 나머지 공사비 605,550,000원(= 660,000,000원 ~ 54,450,000원) 중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 288,584,978원4)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설계비용 주장은 그 정확한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아래 가맹금의 반환 범위 산정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을 제외한 316,965,022원(= 605,550,000원 ~ 288,584,978원)은 피고가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억 원 중 가맹금은 합계 471,415,022원(= 컨설팅비 1억 원 + 가맹비 및 교육비 54,450,000원 + 정착물·설비·상품의 대가 316,965,022원)이다.

다. 본소 중 이 사건 공사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000,000원이고, 그중

100,000,000원은 감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위 660,000,000원 중 371,415,022원(위 54,450,000원 + 위 316,965,022원)이 가맹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공사비는 288,584,978원(= 660,000,000원 - 371,415,022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5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가맹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① 피고는 2022. 7. 24.부터 2022. 10. 4. 사이에 원고에게 총 6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2. 10. 27.에야 원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전달받은 사실, ③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2. 11.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원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가맹금 471,415,022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가맹금 반환의 범위

(1)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2. 10. 23.경부터 2024. 5. 10.경까지 약 18개월 동안 원고가 설계한 이 사건 카페의 인테리어를 변경하지도 않은 채로, 그 영업표지만 'F'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 ② 이 사건 카페의 소재지, 규모, 홍보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설계한 인테리어는 이 사건 카페의 특징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특색 있는 음료를 모방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만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대신에 가맹사업법 절차를 준수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가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위,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므로, 인용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위로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본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가맹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1. 1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12.5)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옥

별지

- 1) 피고가 2022. 7. 24. 원고에게 지급한 'E 계약금' 명목 100,000,000원을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총액에서 감액한다는 취지로 "(납부완료)"기재를 한 것이다.
- 2) 이 부분 지급기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후 합의에 따라 2022. 10. 초순경으로 변경되었다.
- 3) 갑 제6, 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2. 8. 3.자 견적서(갑 제2호증)에는 총공사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견적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메시지(갑 제6호증)를 보낸 점, ② 피고는 2022. 8. 4. 원고에게 "부가세는 주류대출 나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갑 제25호증)를 보낸 점, ③ 2022. 9. 22.자 세부명세서(을 제2호증의 2)에는 공사비 합계란 바로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총공사비 600,000,000원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명시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종료된 2022. 10. 15.경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0,000원(= 공사비

600,000,000원 × 10%)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에는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4)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 인테리어 232,916,989원 + 소품 2,143,384원 + 주방기물 14,103,371원, 카페기물 26,577,503원 + 테이블 및 의자 12,843,731원)

5)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조